

	<b>교수학습지원센터규정</b>	규정번호	3-7-2
		제정일자	2005.03.07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 (교수학습지원센터)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법, 학습법, 교육환경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.

1. 교수의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
2. 학생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
3. 자기주도학습 지원
4.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지원
5. e-Learning 연구 개발 및 지원
6. 교육매체 연구개발 및 정보 제공
7. 센터 내 각종 교육매체의 관리 및 운영
8.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 제2장 조 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4조(연구교수 및 연구원) ① 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직원 및 조교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교무입학처장, 학술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교원 또는 연구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7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·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 및 개발관련 과제 선정 및 필요한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#### 제4장 재 정

제11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## 제5장 보 칙

제13조(규정변경) 센터의 규정은 위원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14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